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 기관경고

[제 목] 국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속 기 관] 광명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광명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광명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광명시체육회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프로그램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정관」 제39조(재산의구분), 제40조(재원),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및 「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의 「정관」에 따르면 재산과 재원을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지원·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예산편성 및 결산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체육회의 「회계규정」에는 회계를 건전하고 공정·타당하게 운영하기 위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체육회는 20\*\* ~ 20\*\*년도 이사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년도에는 ●●●● 등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도비사업의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않았고 \*\* ~ \*\*년도 이사회에서도 ●●●●을 제외한 국·도비사업의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20\*\* ~ 20\*\*년도 대의원총회에서는 체육회에서 지출한 국·도비 결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는 20\*\* ~ 20\*\*년도 시군체육회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공통지적사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 국·도비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하지 않았다.

#### 4. 확인된 사항

국·도비사업의 예산을 알수 없어 자료에 추후 편성으로 기재함으로써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고 예산금액이 확정될 시 심의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 [조 치 사 항] 광명시체육회장은

20\*\*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계약·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광명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광명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 할 때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일반원칙), 제42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sup>1)</sup>, 제32조(세금계산서 등)<sup>2)</su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sup>3)</sup>에 의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⑧ “생략”

3)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계관리를 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 가. 계약처리절차 부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용품구매 등 집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을 실시할 경우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확정된 사업계획에서 대상별·시기별로 분할하여 구매하여서는 안된다.

20\*\*년도 광명시청의 감사에서 계약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가 들어나 지적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는 별지 제8호 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20\*\*년도 경기도체육회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받은 경기도⓪⓪⓪⓪ 사업에서 두 개 종목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금액을 나누어 구매하는 등 분할구매가 의심된다.

## 나. 지출 증빙서류 부실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물품검수조서 등을 받지 않았고 폐업한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 증빙처리하는 등 지출 증빙에 부실이 발생하였다.

[표1] 지출 증빙서류 부실

순	사업명	금액	증빙서류	비고
1	20** ■■■■■ 외 다수	*,***,***	사업자등록증	
2	20** ■■■■■	*,***,***	**고 명의 견적서	
3	20** ○○○○	*,***,***	비교견적 폐업업체(**스포츠)	
4	20** ○○○○	***,***	비교견적 폐업업체(**스포츠)	
5	20** □□□□	***,***	비교견적 폐업업체(**스포츠)	
6	20** □□□□	*,***,***	물품검수증	
7	20** ⊕⊕⊕⊕	*,***,***	비교견적 폐업업체(**스포츠)	
8	20** ⊕⊕⊕⊕	*,***,***	비교견적 폐업업체(**스포츠)	
9	20** ♥♥♥♥	***,***	인건비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10	20** ♥♥♥♥	*,***,***	비교견적 폐업업체(*****조합)	

### [조치사항] 광명시체육회장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체계적이고 청렴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회성 교육이 아닌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20\*\*년도 ~ 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서류 보충 계획을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위임전결내규 미준수

[소 속 기 관] 광명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광명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사무국 제반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위임전결 내규」(이하 “위임전결”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부터 자체행사 관련 업무 등 21가지 업무내용에 따라 위임전결을 내규와 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예산집행에 있어 건당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장의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20\*\*년도의 1천만원 이상 예산집행에서 회장의 전결이 아닌 사무국장의 전결로 집행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입결의는 담당자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사무국장 전결로 운영하고 있다.

[표1] 위임전결 미준수 지출내역

순	사업명	지출내용	금액	비고
1	20** ▲▲▲▲	장비 구매	** , ** , **	
2	20** ▲▲▲▲	장비 구매	** , ** , **	
3	20** □□□□	집행잔액반납	** , ** , **	
4	20** □□□□	수입결의	** , ** , **	
5	20** ■■■■	용품 구매	** , ** , **	
6	20** ■■■■	수입결의	** , ** , **	
7	20** ■■■■	용품 구매	** , ** , **	
8	20** ■■■■	용품 구매	** , ** , **	
9	20** ■■■■	용품 구매	** , ** , **	
10	20** ■■■■	용품 구매	** , ** , **	
11	20** ■■■■	용품 구매	** , ** , **	
12	20** ≡≡≡≡	수입결의	** , ** , **	
13	20** ●●●●	수입결의	** , ** , **	
14	20** ●●●●	수입결의	** , **	
15	20** ●●●●	수입결의	** , ** , **	

[조 치 사 항] 광명시체육회장은

위임전결 사항에 맞도록 20\*\*년도 체육회 운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위임전결 내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정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